

#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 위원회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## 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‘본 대학원’이라 한다)의 발전목표인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법무 전문교육기관 달성을 위하여 본 대학원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화위원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구성 등)

-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의 원장이 임명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본 대학원의 국제교류센터장과 경희법학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 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각 전공별 균형, 외국어강의 담당여부 등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## 제3조 (기능)

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외국의 대학·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
2. 외국어강의의 개설 등에 관한 사항
3. 학생들의 해외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
4. 국제학술회의에 관한 사항
5. International Scholar의 초청 및 활동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4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5조 (소집 및 의결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 1.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2.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
-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